



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[시행 2003. 10. 25.] [조례 제639호, 2003. 10. 25., 제정]

서울특별시 양천구(자치행정과), 02-2620-308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·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,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자원봉사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3.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4. 자원봉사수요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(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)과 비영리법인·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.
5.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연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·조정·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사회개발 및 관리에 관한 봉사활동
2.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
3. 지역주민 의식수준 향상 및 공동체 문화형성에 관한 봉사활동
4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
5.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
6.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
7.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
8. 재해·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
9. 문화·예술·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
10. 인권옹호, 부패방지,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
11.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12.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(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)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·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**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센터(이하 센터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32-12번지에 둔다.

제6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양천구 자원봉사업무 종합계획 수립
2. 자원봉사자의 모집·상담·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
3.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단 구성·지도 육성
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5. 자원봉사단체, 학교,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·협력에 관한 사항
6.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
7. 자원봉사관련 연구, 조사, 홍보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

- 제7조(센터의 운영 등)** ① 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. 다만,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,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

- 제8조(지도감독)** ①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,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)**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1.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관련된 사항
 2.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
 3.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주요 사항
 4.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,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회의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등록)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제 3 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

제11조(자원봉사주간)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일을 설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보험가입)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 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포상 및 시상)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자원봉사자 우대 등)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초청 등 우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인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·학교 등 법인·단체의 장에게 취업·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03.10.25 조례제063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